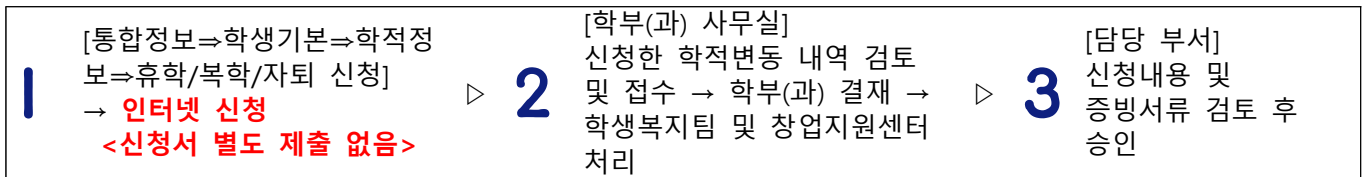


2020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·복학 신청 안내

I. 신청기간: 2020. 01. 15.(수) ~ 23.(목)

※ 원활한 수강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생성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I. 신청방법



* 담당부서: (서울) 학사운영팀 / (천안) 교무팀

※ 2020학년도 제1학기 휴·복학 신청부터는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.(자퇴원은 기존 방법대로 자퇴원을 직접 학과에 제출)

<문의사항은 소속 학부(과)사무실로>

※ 외국인유학생의 경우, 국제학생지원팀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학적변동 확정일은 위 3.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날과 일치합니다.

단,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위 2.의 '학부(과) 접수일'을 기준으로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.

III. 휴학·복학

1. 휴학의 종류

구분	내 용	휴 학 기 간
일반휴학	-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- 학기 또는 학년도(1년) 단위로 신청 -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	통산 4년(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)을 초과할 수 없음
질병휴학	- 질병으로 인한 휴학 - 학기 단위로 신청 -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	
군휴학	-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-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	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,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,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
모성보호 휴학	- 임신·출산·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(양육: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) -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	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창업휴학	-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-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-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- 문의: (서울) 창업지원센터 ☎02-2287-5457 (천안) 창업지원센터 ☎041-623-0343	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신입생, 재입학생,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은 불가능합니다.

(단,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입원 중인 학생이 진단서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)

2. 휴학·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
일반휴학	- 해당없음
군제대 후 일반휴학	- 전역증(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)
질병휴학	-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* 신입생, 재입학생,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: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입원 중인 자가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
군휴학	- 입영통지서
모성보호휴학	- 임신·출산·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)
창업휴학	- 창업 사실 증명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소득금액증명원 등)
일반복학	- 해당없음
군복학	- 전역증(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)
창업복학	- 창업 사실을 증명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소득금액증명원 등)

※ 휴학 시 유의사항

1.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개강 4주 이내에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, 미복학제적 처리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람
2. 장학 사항이 있는 학생이 휴학(자퇴) 신청하는 경우, 서울: 학생복지팀(☎02-2287-5016) / 천안: 학생복지팀(☎041-550-5021) 확인 후 휴학(자퇴) 신청하여야 함.
3. 외국인 학생은 서울: 국제학생지원팀(☎02-2287-5469) / 천안: 국제학생지원팀(☎041-550-5406)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.
4. 등록금 이월: 학칙 제 69조에 의거,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에 일반휴학·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 후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 하여야 함. 다만, 질병휴학·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은 수업일수의 3/4이상 재학 시 해당 학기 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복학 후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음.(2/3미만 재학시에는 해당 학기는 미이수 처리되며 등록금은 이월됨.)

※ 복학 시 유의사항

1. 수강신청 기간: 2020.02.04.(화)~07.(금) <일자별 10:00~23:30, 마지막 날 17:00까지>
* 상세사항 홈페이지 추후 공지, 최종 승인 완료 후 수강신청 가능하므로 복학 신청기간 엄수 요망

2. 등록기간: 2020.02.21.(금)~25.(화)

* 등록 관련 문의: (서울) 재무회계팀 ☎02-2287-5019 / (천안) 총무회계팀 ☎041-550-5035

(조기복학생 및 학기초과자의 경우, 등록금고지서 생성 별도 요청)

3. 예비군대대 전입신고 방법

군복학 승인 시 대학 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, 복학신청 시 군필 여부와 군번을 입력(예비군대대 편입 완료 여부는 e-mail로 통보되며 이후 모든 연락은 e-mail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 발생 즉시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 인적사항 수정 바람)

*문의: (서울) 예비군대대 ☎02-2287-5117 / (천안) 예비군대대 ☎041-550-5392

2020. 01.

상명대학교 교무처장